

사회적책임투자(SRI)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 동향 조사

2011. 12.

Contents

Executive Summary	5
I. 개요	9
□ 사회적책임투자(SRI)의 정의	11
□ 사회적책임투자(SRI)의 배경	11
□ 사회적책임투자(SRI) 실행 전략	12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13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정의	15
□ 기존 CSR 관련 표준들	15
□ 기존 표준 관련 주요 이슈	18
□ 정책적 선택(policy options)	24
III. 맺음말	31

Executive Summary

- (CSR 표준 동향) 최근 몇 년간 CSR 표준은 그 수와 종류에 있어 증가추세에 있으며 표준을 만든 조직에 따라 1) 정부간 국제기구 표준, 2) 다중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MSI) 표준, 3) 산업협회 규정, 4) 회사의 사규 등으로 분류
 - (정부간 국제기구 표준) 가장 권위 있는 CSR 표준으로서 국제적 선언 및 협정에 의해 인정받은 보편적 원칙들에 기초하고 있으며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주요 출처
 - (다중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MSI) 표준) 시민사회, 비즈니스,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혼합체를 포괄하는 파트너십으로서 시장 및 비시장 행위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표준
 - (산업협회 규정) 일반적으로 산업 내 선도 기업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규정으로서 공급망과 국제경영의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다룸
 - (자발적 CSR 표준) 출처, 기능, 대상자, 상호관계에 차이가 있고, 개발에 미치는 방식이 상이한 다수의 표준들로 구성
- (기존 표준 관련 주요 이슈) 기존 표준과 관련하여 1) 다양한 표준들 간의 차이, 중복, 불일치, 2)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보장, 3) 자발적 CSR 표준과 국가 법률 간의 관계 정립, 4) 보고의 표준화 및 투명성, 5) CSR 표준의 준수와 시장에 대한 충격, 6) CSR 표준으로 인한 무역 및 투자 장벽 등과 같은 이슈가 논의되고 있음
 - (표준 간 차이, 중복, 불일치) OECD 가이드라인은 인권에서 조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업관행을 다루나, ILO와 MNE 선언은 고용관행과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등 표준 간 다루는 주제와 산업 등에서 차이

- (표준설정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문제) 국제적 합의를 반영하는 정부간 조직에 비해, 회사 규정과 산업협회 규정들은 제한된 외부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인해 신뢰성 저하 문제 발생
- (보고 표준화 및 투명성 문제) 최근 몇 년간 선진국과 개도국 다국적기업의 CSR 보고가 크게 증가했음에도 보고의 일관성, 표준화, 비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결여
- (CSR 표준 준수와 시장충격) MSI 표준과 산업협회 표준들은 일반적으로 조사/회계감사, 시정조치 계획, 보고, 소비자 라벨링 제도가 포함되는 확인 또는 승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MSIs는 표준 설정 과정과 확인 과정을 분리시켜 왔고 모니터링 및 회계감사 절차를 점점 제 3자에게 맡기고 있음
- (CSR 표준으로 인한 무역·투자 장벽) 사회 및 환경 표준들 특히 제품과 무관한 공정 및 생산방식 표준들이 잠재적으로 무역 및 투자에 장애물이 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CSR 표준은 표준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투자 장벽을 만드는 것이 가능
- (정책적 선택) 정부는 CSR 표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업 지배구조, 국제무역, 투자의 구조 등 정책과 제도적 틀 마련을 통해 중요한 역할 수행이 가능함
 - (CSR 표준 개발 지원) 정부는 CSR 표준 제정과 관련하여 물질적 지원, 기술적 전문지식 제공,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독려 등 역할 수행
 - (공공부문 조달정책에 CSR 적용)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에 대한 좋은 사업관행 조성을 목적으로 공공부문 조달 정책에 CSR을 적용. 다만 CSR 표준을 조달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들의 표준 활용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표준을 지키는데 능력이 제한된 회사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CSR 표준 이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제공) 다양한 가치사슬 단계에서 지식, 기술, 능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표준의 활용을 지원
 - (CSR 공시 및 책임투자 촉진) CSR 실천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거래소를 통해 CSR 이행실적 공시 촉진

- (자발적 표준의 경성법 반영) 자발적 표준의 일부를 차용하여 규제력 있는 경성법으로 전환
- (투자 및 무역 증진, 기업개발에 적용) 재생에너지와 같이 지속가능한 산업에서의 투자나 CSR 표준 준수 시 인센티브 제공
- (CSR 표준을 국제투자협정에 포함) EU 회원국에 의한 BITs는 CSR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유럽의회는 앞으로 EU와 체결하는 모든 FTA의 투자관련 항목에 CSR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등 국제투자협정에서의 CSR 표준 중요성 증대



I 개요

□ 사회적책임투자(SRI)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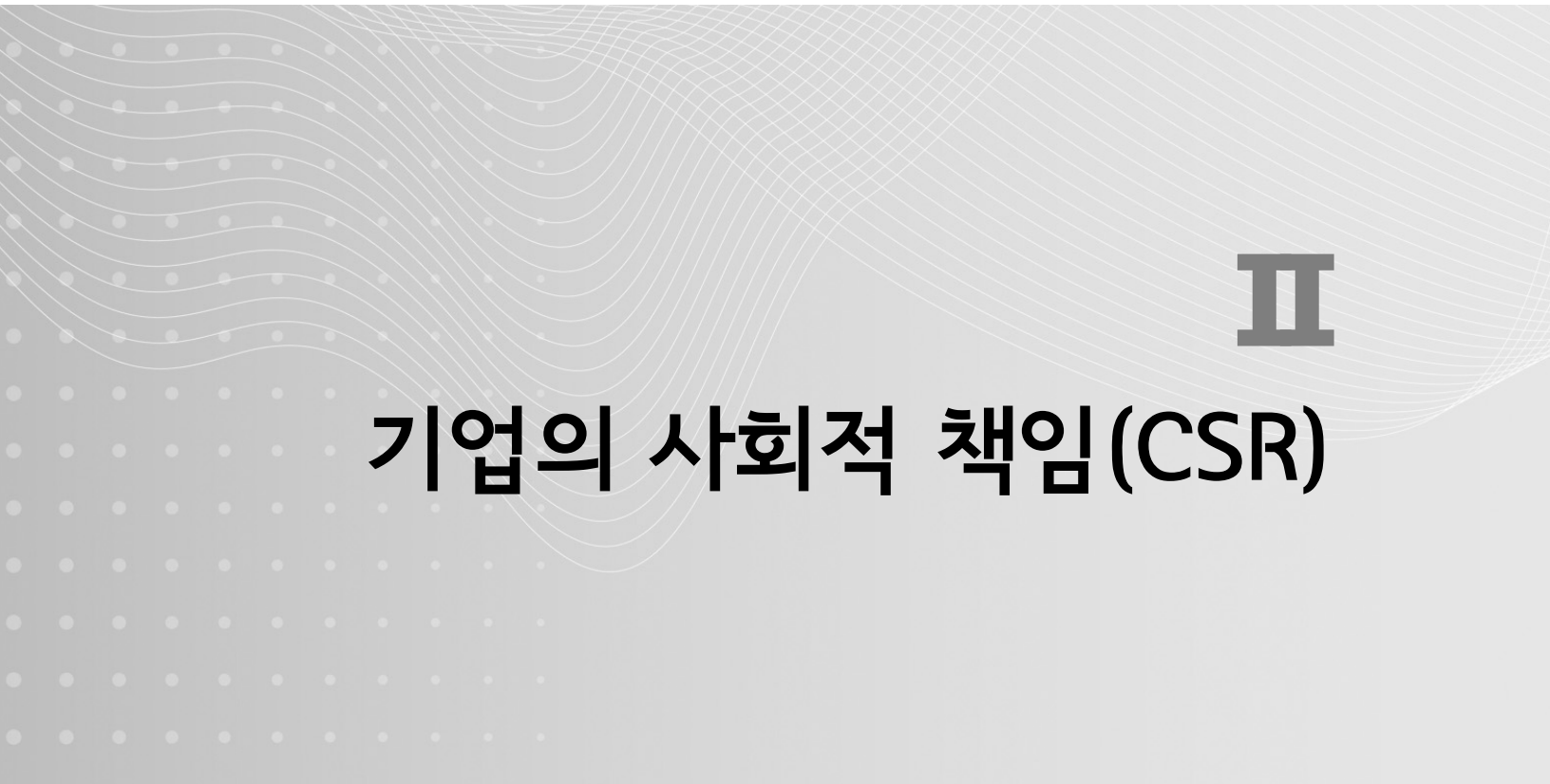
- 투자 의사 결정시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인 요인들까지 고려하는 투자방식
 - － 단순히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책임 및 지배구조 등과 같은 무형 자산 가치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에 투자

□ 사회적책임투자(SRI)의 배경

- 종교를 기반으로 하는 투자자들이 군수품, 담배, 주류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품을 판매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거부하는 사회운동의 한 형태로 출발
- 이러한 윤리적 투자운동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점차 정당한 투자기법으로 받아들여져 환경·사회 부문으로 확대
- 21세기 들어 대형회계부정사건, 단기이익만을 노린 무책임한 투자 등으로 인해 투자 결정 요소 중 윤리(E)가 지배구조(G)로 대체
 - － 1990년대까지 투자의사 결정시 사회(Social), 환경(Environment), 윤리(Ethics)-SEE 요소가 주로 고려되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ESG로 그 구성요소가 바뀜

□ 사회적책임투자(SRI) 실행 전략

- 사회적책임투자(SRI)의 유형은 사회적 스크리닝(Social Screening), 주주권 옹호(Shareholder Advocacy), 지역사회투자(Community Investing) 등 3가지가 있음
 - 사회적 스크리닝(Social Screening): 기업의 재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이나 경영활동의 과정에서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즉, 비재무적 측면을 고려하여 투자하는 형태
 - 주주 경영관여(Shareholder Advocacy): 투자자가 주주의 입장에서 주주제안, 의결권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에 관여하여 기업의 경영방향이나 방침에 영향을 행사하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투자 형태
 - 지역사회투자(Community Investing):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층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투자하는 형태



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SR 관련 논의 동향은 WIR 자료를 중심으로 재정리 함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정의

-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기업이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통해, 기업이 속한 사회에 기여함과 동시에 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이해관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활동
- 하지만 이에 대한 정의는 학자, 단체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의가 없는 실정
 - － 다양한 조직에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CSR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문화, 국가의 발전정도, 지역사회에서의 우선순위 등이 반영되기 때문에 발생

□ 기존 CSR 관련 표준들

- 최근 몇 년간, CSR 표준은 그 수와 종류가 모두 증가 추세
- CSR 표준은 그것을 만든 조직에 따라 분류 가능
 - － 정부간 국제기구(IGO) 표준
 - －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MSI) 표준
 - － 산업협회 규정
 - － 회사의 사규

○ 정부간 국제기구(IGO) 표준

- 국제적 선언 및 협정에 의해 인정받은 보편적 원칙들에 기초
- 가장 중요하고 권위 있는 CSR 표준
- 국제연합(UN),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 표준의 주요 출처

<UN '글로벌콤팩트 (Global Compact)'>

- 2000년 UN 사무총장 주도로 발족
- 인권, 노동, 환경과 반부패 분야에서의 기업전략을 글로벌 콤팩트의 10대원칙과 결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틀을 제공

<ILO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대한 삼자선언(MNE Declaration)'>

- 1977년 이래로 2000년, 2006년 두 번의 개정을 거침
- 일반 정책, 고용, 직업 훈련, 노동 조건과 생활, 노사관계 영역에서 기업의 활동을 장려

<ILO '노동자기본권선언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 at Work)'>

- 1998년 ILO 총회가 채택
- 다자간 무역기구 내에서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해야 한다는 국제적 논의를 배경으로 함
- ILO의 회원국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보편적 노동기준은 안전보건, 사회보장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 보다는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강제노동 금지, 차별금지, 아동노동의 금지와 같은 기본권과 관련된 핵심노동기준임을 확인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 기업이 주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지역사회, 환경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할 것을 요구하며 1977년 제정
- 지금까지 42개국이 이 가이드라인을 수락
- UN과 ILO에 비해 협약 조인국가들의 수에 있어서는 적으나, 그 국가들 내 기업이 2010년 FDI의 70%를 차지하는 등 경제 규모와 수준에 있어서는 앞 섬

○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MSIs) 표준

- 다중 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란 규정 설정을 목적으로 형성된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는 파트너십(cross-sectoral partnership)으로서, 시장 및 비시장 행위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표준을 고안하고 관리함
- MSIs는 시민사회, 비즈니스,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혼합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MSI 표준에서는 제품 무관론 공정 및 생산방식(PPM)을 가장 흔히 다룸

<공정 및 생산방식(PPMs)>

- PPMs란 원자재의 구매로부터 최종 제품이 생산되어 출하될 때까지의 모든 생산공정 및 방법을 지칭
-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최종 상품뿐만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생산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에도 관심이 높아졌는데, 그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 공정 및 생산방식(PPMs)이라는 개념
- PPMs 규제는 생산 활동의 어느 단계에서든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
- PPMs 규제는 제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크게 제품 관련 및 제품 무관론 PPMs로 구분됨

- 주로 시민사회 및 비즈니스 분야 행위자들에 의해 개발되나, 보통 국제적인 연성법(softlaw) 관련 문서들의 규범적 틀을 참조
- 대표적인 MSI는 국제표준화기구(ISO)로, ISO 표준은 WTO와 같은 국제기구 및 국가들에 의해 널리 인정됨

<ISO 'ISO 26000'>

- 2010년 ISO가 발표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
-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용어 대한 중요한 기준 제공

○ 산업협회 규정

- 공급망과 국제적 경영의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다룸

- 일반적으로 산업 내 선도 기업들이 공동으로 개발

○ 개별 회사의 사규

- 현재 수 천 개의 사규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대규모 TNCs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함
- 선진국 및 개도국 출신의 대규모 TNCs 중 75% 이상이 사회 및 환경 문제에 대한 방침을 보유
- 가치 사슬에 적용되는 TNC 규정의 약 절반가량이 정부간 국제기구(IGO) 표준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참조함

○ 자발적 CSR 표준의 영역은 다수의 표준들로 이루어짐

- 출처(source), 기능(function), 대상자(addresses), 상호관계(interrelationships) 면에서 서로 상이
- 이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표준 개발에 영향을 미침
- 이러한 표준들의 확산은 결과적으로 표준 설정 및 이행과 관련된 많은 시스템 상의 난관들을 초래

□ 기존 표준 관련 주요 이슈

○ 다양한 표준들 간의 차이(gaps), 중복(overlaps), 불일치(inconsistencies)

- 표준들 간에는 다루어지는 주제, 집중하는 산업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함
- OECD 가이드라인은 인권에서 조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업 관행을 다루기는 하지만, UN과 ILO 문서와 비교 시 보다 제한된 수의 회원국에 의해 협의됨
- ILO의 MNE 선언은 고용 관행과 인권에 특별히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는 고용주, 노동자, TNC와 함께, MNE 선언을 준수하는 것과 직접적

으로 관련된 보다 넓은 그룹의 소속국가들을 대상으로 삼음

- 주제 차이(subject matter gaps)는 MSIs 간에 존재하는데 이는 많은 표준들이 환경 또는 사회 문제 중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고, 보통 두 문제에 같은 정도로 주목하지 않기 때문
 - 또한 노동권과 같이 “과정에 대한 권리(process right)”에 초점을 두는 표준들에 비해 최저임금 준수와 같이 구체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표준들에서 존재함
 - 차이는 모든 산업(또는 가치 사슬의 일부분)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이 초점을 두는 특정 산업 내에서 존재하며, 또한 기업들 간의 활용에 있어서도 존재함
 - 대규모 TNCs에 의한 표준 선정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폭포 효과(cascade effect)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모든 구성원들에게 획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사실 일부 표준들은 다양한 수준(단계)에서 한데 모여 있는 것을 좋아하고 소규모 기업들과 생산자들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드는 경향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도 기업들이 CSR 표준을 선정하고 이행함에 따라, 다른 회사들이 평가받을 때 기준이 되는 최고의 관행이 설정됨
- 개별 회사의 표준들 간에는 중복과 불일치가 모두 발생 가능한데, 다루어지는 이슈(노동 관행, 환경, 인권, 뇌물수수 등)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중복이 있을 수 있고, 세부적인 운영 지침에 있어서 상당한 불일치가 생길 수 있음
- 대부분의 회사들은 핵심 이슈에 있어서 주요 정부간 국제기구(IGO) 표준들을 참조하고 있으므로 다루어지는 주제들에 있어서의 불일치는 어느 정도 줄어들지만 많은 정부간 국제기구 표준들은 구체적인 미시 수준의 운영 지침들은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세부사항들에 대한 보강은 회사들 스스로의 몫임
 - 그 결과 불일치가 야기되며, 이는 공급자들이 다양한 요구사항, 복잡성의 증가, 납세협력 비용(compliance cost)의 증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의미
 - 산업 특수적 표준들의 증가는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표준 설정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문제

- 표준의 신뢰성은 충분히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들을 표준 설정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 회사 규정 및 산업협회 규정들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한정된 포함으로 인한 낮은 신뢰성을 이유로 종종 난관에 부딪침
 - 정부간 국제기구들은 권위 있는 표준 설정자로 인식되는데, 이는 국제적인 합의를 반영하기 때문
- MSI 표준의 인기는 주로 그들이 다양한 부문에 걸친 처리과정(cross-sectoral process)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
- 포괄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룬다는 것은 자원 제약으로 인해 CSR 표준 설정 과정에 개도국 이해관계자들이 대개 제한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을 다룸을 의미하기도 함

○ 자발적 CSR 표준과 국가 법률 간의 관계 정립

- 자발적 CSR 표준들은 정부의 규제 노력을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노동, 사회, 환경보호 관련 법률의 대용물로 승격되었을 경우, 또는 CSR 표준들이 국내 또는 국제적 규정들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자발적 표준들은 잠재적으로 정부의 규제 노력을 훼손, 대체 또는 그로부터 주의를 돌려버릴 수 있음

○ CSR 보고의 일관성, 표준화, 비교 가능성, 투명성 결여

- 최근 몇 년간 선진국과 개도국 TNCs 사이에서 CSR 보고가 엄청나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고에서 일관성, 표준화, 비교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음
- 많은 이니셔티브들은 표준화된 CSR 보고의 틀을 형성하고 있음
 - 이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적 이니셔티브들로는 UNCTAD의 정부간 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그룹(ISAR), 몇몇의 MSIs(GRI, 탄소 정보공개 기준위원회, 국제통합

보고위원회 등)가 있음

- 회사들 간 이러한 틀의 활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며, 심지어 자발적 CSR 보고 틀을 채택한 국가들도 이 틀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는 선택적이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임
- MSIs와 산업협회의 보고는 투명성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들의 보고가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한 이니셔티브들의 성과를 평가 및 비교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
- 일부 이니셔티브들은 보고 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시작

<사례1>: 공정노동연합회(Fair Labour Association)는 연차 보고서를 발행하고, 자신들의 표준을 채택한 국가들이 이룬 발전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

<사례2>: 공정의류연합회(Fair Wear Association)와 같은 일부 MSIs는 그들의 표준을 채택한 회사들을 위해 보고 틀을 만듦

○ 자발적 CSR 표준 준수 문제

- 자발적으로 표준을 채택한 회사들이 실제로 그 표준을 반드시 따르도록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
- 준수 여부 입증에 실패하는 것은 표준의 신뢰성과 시장 영향력을 낮출 수 있음
- 기존 CSR 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준수촉진메커니즘은 그 범위가 무(無)에서부터 보고 요구사항과 보상 메커니즘, 회계감사와 공장시찰 등 사전대책을 강구하는 (proactive) 메커니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주요 정부간 국제기구(IGO)들은 준수 메커니즘을 포함

<IGO 준수촉진메커니즘의 예>

- UN ‘글로벌콤팩트’의 “보전 방안(integrity measures)”과 “발전에 대한 소통(communication on progress)”
- ILO ‘MNE 선언’의 “해석 절차(interpretation procedure)”
- OECE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사례 절차(specific instance procedures)”와 “연락사무소(National Contact Points)”시스템

- MSI 표준과 산업협회 표준들은 일반적으로 조사/회계감사, 시정조치 계획, 보고, 소비자 라벨링 제도가 포함되는 확인 또는 승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
-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MSIs는 표준 설정 과정과 확인 과정을 분리시켜 왔고, 모니터링 및 회계감사 절차를 점점 전문적인 제 3자에 의존하고 있음
- 확인제도 및 회계감사와 관련된 문제점은 그것이 회사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표준의 채택률을 낮추고 시장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역으로, 준수메커니즘의 결여는 표준의 자발적 채택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낮고 불명확한 그리고 측정할 수 없는 이행률을 야기할 수 있음

○ 시장 상태에 따른 표준의 영향력 차이

- 해양관리협의회(MSC)와 산림관리협의회(FSC)와 같은 일부 표준이 5~10%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유함에 따라, “개념의 입증(proof of concept)” 단계는 이미 지나 갔고 현재 해결해야할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러한 표준들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하는 것임
- 이러한 문제는 매우 세분화된 산업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산업이 세분화 될수록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지려면 보다 많은 수의 회사들로부터 표준을 채택 받아야 하기 때문
- 반면, 보다 덜 세분화된 산업에서는 개별 회사의 규정들조차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

○ CSR 표준으로 인한 무역·투자 장벽

- 사회 및 환경 표준들, 특히 제품 무관련 공정 및 생산방식(PPMs) 표준들이 잠재적으로 무역·투자에 장애물이 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음

<환경 규제와 관련된 표준이 국가 간 무역에서 장애물로 작용한 사례: “새우-바다거북 사건”>

- 1996년, 미국이 새우를 잡는 과정에서 바다거북이 그물 안으로 들어와 질식사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TED (Turtle Excluder devices)를 달도록 의무화 한 Section 609 of Public Law 101 - 162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TED를 장착하지 않고 잡은 새우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불문하고 미국 내 수입 판매를 금지한 사건

- CSR 표준은 표준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 하는 회사들에 대해 (국내외) 투자에 대한 장벽을 만드는 것이 가능

<사례 1>: 과테말라에서는 FSC 확인서가 없는 산림회사들은 마야생물권보호지역 내에서의 경영이 금지 됨(FSC, 2009)

<사례 2>: 덴마크에서는 정부의 CSR 표준을 충족시키는 회사만이 해외 투자 지원 자격이 있음

- 두 사례 모두에서 해결되어야 할 과제는 표준이 합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와 보호주의 목적으로 남용되는 경우를 구별하는 것
- 이를 위해서는 CSR 표준의 적용을 모니터하고 차별적 관행이 있는 경우 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
- 회사들에게 자발적 CSR 표준을 반드시 따라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자발적 CSR 표준은 WTO 무역협정을 통한 이의제기와 투자 보호주의 문제에 덜 민감함
- 이러한 이유로 자발적 CSR 표준들은 공공정책 목표달성의 측면에서 의무적 요구 사항들보다 문제가 될 소지가 적으나 자발적 표준들만으로는 일부 회사들을 방치하거나 이들에게 무관심하게 되는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의무적 표준과 자발적 표준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함

- 의무적 표준과 자발적 표준 간 균형을 이루기란 어려운 일이나, 무역 및 투자 협정 하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기준과 법률상 비례의 원칙(과잉조치 금지의 원칙)에 기반하여 정당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
- 마찬가지로 국가의 통제권은 공공정책과 경제발전을 위해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를 정당하게 규제할 수 있음

□ 정책적 선택(policy options)

- 정부는 CSR 표준의 영역이 제기하는 도전과 기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과 제도적 틀 마련을 통해 중요한 역할 수행 가능
- 이러한 점에서, 일부 국가들은 CSR 표준을 기업지배구조와 국제 무역 및 투자의 구조에 적용하기 시작
- 이 방법은 TNCs의 지속가능한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본국법 (national law)과 국제 협정들을 가장 잘 준수하도록 고취하는 것을 목표로 함

○ CSR 표준의 개발 지원

- 물질적 원조 및 기술적 전문지식 제공, 이해관계자들의 참가 동원 등
- 국가의 인증 관리 시스템 표준(MSSs)의 개발 지원
 - 이 방법은 기업들에게 CSR 영역에서 국가의 인증 여부에 따라 그들 스스로를 구별 지을 수 있도록 보증된 표준을 제공함
 - 2004년 브라질과 멕시코, 2008년 포르투갈, 2009년 스페인, 2010년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의 표준을 비롯해 최근 국가적 차원의 CSR MSSs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음
 - 일부 MSSs는 ISO표준에 기반하고 있거나 또는 ISO표준에 맞춰 조정됨
 - 국가적 차원의 CSR MSSs 확산에 따라 국제적 차원의 MSS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질 가능성이 있음

○ 공공부문 조달정책에의 CSR 적용

- 보호주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 차별적 관행을 피하도록 주의하면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에 대한 좋은 사업 관행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

<사례1>: 중국 정부는 공적조달에 있어 특별대우를 받아야 할 환경 친화적 제품들의 “녹색 리스트 (green list)”를 보유하고 있음

<사례2>: 독일 정부는 합법적이고 지속가능한 출처로부터 온 것이 확인된 목재와 목공품만을 구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거로 FSC 인증서를 받고 있음

- CSR 표준을 조달정책에 적용하는 것은 기업들의 표준 활용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지만 표준을 지키기 위한 능력에 제한이 있는 회사들, 특히 상대적으로 빈국 출신 회사들의 운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 CSR 표준 이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능력 제공

- 표준 활용 저하의 요인에는 가치 사슬 내 다양한 단계에서의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의 부족 등이 있음
- 표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통 능력 개발이 요구되며, 이는 가치사슬 내 “공유된 책임(shared responsibility)” 형성의 일환으로서 비평가들이 “책임 떠넘기(off-loading responsibility)”라고 부르는 것과 상반됨

* 책임 떠넘기기(off-loading responsibility): 표준 준수 부담이 CSR 표준을 충족시킬 능력이 없는 개도국 공급자들만의 몫이 되는 경우

- 표준을 조성하고자 하는 개도국 정부들은 기부국가들과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기부국가들은 개도국의 지역 산업 및 규제 기관들에게 능력배양 이니셔티브를 넘겨주고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

<사례: 볼리비아 정부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간의 프로젝트>

- 볼리비아 임업에서의 FSC 인증을 촉진
- 이는 기꺼이 인증 받고자하는 기업에 대한 능력배양과, 인증 된 회사들과 수출 시장 간의 연결 지원을 포함
- 이 계획의 결과, 현재 볼리비아는 전 세계에서 FSC가 보증하는 가장 큰 열대림을 보유(FSC, 2009)

- 또한 정부는 UNCTAD와 같은 국제적 포럼에서 가장 뛰어난 실천 사례(best practice)를 교환함으로써 CSR 능력 배양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

○ CSR 공시 및 책임투자 촉진

- CSR 실천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증권 거래소, 특히 신흥 시장에서의 증권 거래소들은 책임 투자를 용이하게 해주는 CSR 보고의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증권거래소 상장규정을 이용

<사례 1>: 말레이시아 증권 거래소는 상장 회사들에게 의무적으로 CSR 보고를 하도록 함

<사례 2>: 중국에 있는 상해 증권거래소는 상해 환경정보 공개 가이드라인(Shanghai Environmental Disclosure Guidelines)을 발행해오고 있는데, 상장 회사들에게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을 권고

- 국가적 차원의 CSR 보고 틀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이니셔티브에 의해 개발된 기존의 틀 차용

- 이처럼 보편적인 틀을 사용하는 것은 보고서 간 국제적 비교 가능성을 증진시켜 줌

* 사례: 남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 증권 거래소는 회사들이 지속가능 보고서를 준비할 때 GRI 가이드라인을 이용하도록 요구 함

- 국제적으로 일치된 CSR 보고 방법을 조성하고 책임투자를 고무하는데 관심이 있는 정책결정자들은 UNCTAD의 정부간 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그룹(ISAR)이나 지속가능 증권거래 이니셔티브와 같은 포럼을 통해 함께 일할 수 있음

○ 자발적 표준(연성법)의 경성법 반영

- 규제력 있는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정부는 기존 CSR 규범들 중 일부를 차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가령, 유기농 식품에 대한 표준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민사회나 산업협회에 의한 자발적 표준에서 비롯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대개 국가의 법률 하에 통제됨
- 또 다른 방안에는 혼합된 “공적-사적 규제제도”가 있음
- 이 방법은 규제력 있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시민사회나 사적 영역에 의해 개발된 표준들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데, 규제를 통해 이행의 통일성은 더 하면서, 표준 설정 과정에서 복합이해관계자들의 활발한 의사 표현은 유지시켜주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기존 정부간 국제기구(IGO) 표준의 준수촉진메커니즘을 강화

- 많은 정부간 국제기구(IGO) 표준들은 이미 사용 중인 준수촉진메커니즘이 있으며, 보상 메커니즘을 포함해 그러한 수단들의 실효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함
- * UN 글로벌콤팩트의 사례: 최근 UN 합동조사단은 UN에게 “10대 원칙을 이행 시 통합성 척도의 시행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권고

○ 투자 및 무역 증진과 기업 개발에의 CSR 적용

- 정부는 보호주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는 차별적 관행을 피하면서, 사회 및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내외 투자를 증진시키는데 적극적인 역할 수행 가능
- 재생가능 에너지처럼 지속가능한 산업에서의 투자나 CSR 표준 준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사례 1>: 덴마크 정부는 개도국을 위한 산업화 기금(IFU)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회사들에게 IFU의 CSR 정책을 따르도록 요구

<사례 2>: 브라질 경제개발은행은 정부간 국제기구(IGO) 표준에 기반해 고객 전체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윤리 규정을 도입

- 일부 국가들은 특혜무역협정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함
- * 사례: 유럽연합(EU)은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GSP-Plus”로 보완했는데, 이는 CSR 실천과 관계가 있는 27개의 핵심 국제협약을 비준하고 이행하는 개도국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인하를 제공함
- 하지만 선천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국가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그러한 국가들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결과 그러한 이니셔티브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전반적인 개발 우선순위와 전략에 따른 주의가 기울여져야 함

○ CSR 표준을 국제투자협정에 포함

- 현재 CSR에 대한 조항들은 IIAs에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적지만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조약들, 특히 투자에 대한 내용이 있는 FTA들은 CSR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중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CSR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보다 최근에 이루어짐
 - 현재, 투자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세 건의 캐나다 FTA는 서문에서 CSR을 언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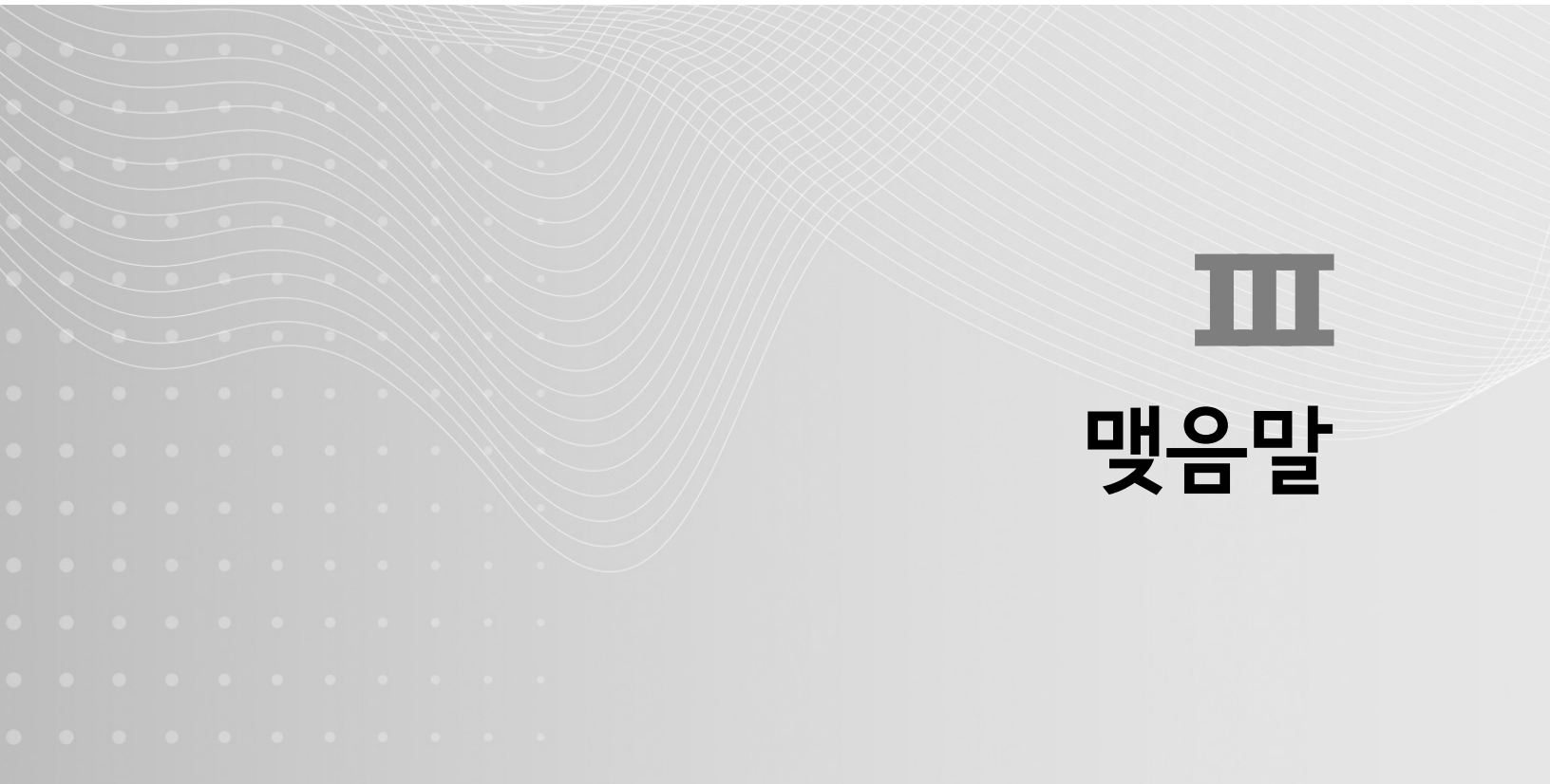
<CSR에 대한 언급이 있는 캐나다-콜롬비아 FTA의 816항의 첫 부분>

“각 당사자들은 그들의 영토 혹은 사법권 적용 범위 안에서 영업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CSR 표준들을 내부 정책에 포함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원리들은 노동, 환경, 인권, 지역사회관계 그리고 반(反)부패와 같은 이슈들을 다룬다. 각 당사자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내부 정책에 CSR 표준을 수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2009년 알바니아와의 FTA, 2010년 페루와의 FTA도 CSR 관련 이슈들을 언급
- EU 회원국에 의한 BITs(양자간 투자협정)은 CSR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유럽 의회는 앞으로 EU와 체결하는 모든 FTA의 투자관련 항목에 CSR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함

- 마침내 몇몇 국가들이 그들의 협약 표준안(model agreement)에 인적자본 형성, 지역의 능력배양, 고용 창출, 기술 교육 및 이전과 같이 구체적인 기업의 공헌을 언급하는 혁신적인 CSR 조항들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실제 IIAs에서 CSR 조항들의 이행은 두고 봐야 함
- “현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조항들은 투자-국가 관계에서 CSR의 중요성을 알리고, 투자-국가 간의 분쟁 해결 시 재판소의 IIA 조항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IIA와 국제적 CSR 표준 사이에 연결고리를 형성할 수 있음
- 여기에서도 또한 증가하는 CSR에 대한 배려가 지나친 보호주의 목적의 정책 개입을 정당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함



III 맺음말

III

맺음말

- 정부는 CSR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범위의 정책 대안을 가지고 있음
- 선진국 및 개도국에서의 선구적 사례들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발생 가능한 과도한 보호무역주의를 해결할 메커니즘을 고안하면서, 동시에 국내 정책과 국제 무역 및 투자 제도 속에 CSR을 주류로 편입시켜야할 때라고 제안
- 많은 정책들이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다양한 방법들은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력이 있는 수단과 자발적 수단이 결합되어 함께 작용하는 형식을 점차 취하고 있음
- 이 결합의 두 가지 중요한 구성요소는 미래 정책 개발에 보다 나은 영향을 미칠 회사들의 향상된 CSR 보고와 개도국 기업들이 이 영역에서 최상의 국제관례를 충족시키도록 도울 강화된 능력배양 프로그램이 될 것임

2011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01	2011 지역별 진출전략	2011.1
11-002	MDB를 통한 해외 정보통신시장 진출전략	2011.1
11-003	스마트 TV 플랫폼 및 콘텐츠의 해외진출 방안	2011.1
11-004	SW 글로벌 마켓 클릭	2011.1
11-005	외국인투자기업, 한국과 通하다 - 대표 외국인투자 성공사례	2011.2
11-006	중국의 성시별 해외투자정책 연구	2011.3
11-007	중국의 금융지도	2011.3
11-008	주력품목별 수출시장 전망 및 확대 방안	2011.2
11-009	2010년 해외 고급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서	2011.3
11-010	필리핀 노동법 핵심번역본	2011.3
11-011	GUIDE TO BUSINESS ESTABLISHMENT IN KOREA	2011.3
11-012	GUIDE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2011.3
11-013	Partnering for the Better Future - 30 Success Storie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2011.3
11-014	KOTRA 공동물류센터의 중장기 발전 방안	2011.3
11-015	세계 이리닝 전략지도	2011.4
11-016	그린리포트(Vol 11. 2011 Spring)	2011.4
11-017	주요 7개국 M&A 동향 조사	2011.4
11-018	韓國投資指南与企業經營信息 (한국 투자가이드 및 기업경영정보)	2011.5
11-019	300개 외투기업 주요경영지표 분석	2011.5
11-020	국내주요기관의 해외네트워크 2011	2011.5
11-022	韓國投資ガイドおよび企業經營情報 (한국투자가이드 및 기업경영정보)	2011.5
11-023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연계성과 국제투자정책	2011.5
11-024	브라질 투자실무가이드	2011.6
11-025	SEOUL FOOD 2011 결과보고서	2011.6
11-026	EU 조달시장 진출가이드	2011.6
11-027	자동차분야 투자유치 위한 주요경쟁국 투자환경조사	2011.7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28	글로벌 ODA, 성공 DNA를 찾아라	2011.7
11-029	2011년 1분기 해외 FDI 동향	2011.7
11-030	2011년 하반기 외국인직접투자전망	2011.7
11-031	외투기업 CEO , 관리자를 위한 노무관리 가이드	2011.7
11-032	Labor Management Guide for CEOs and HR managers of Foreign-invested Companies	2011.7
11-033	2010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1.7
11-034	2010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1.7
11-035	Foreing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0	2011.7
11-036	그린리포트(Vol 12. 2011 Summer)	2011.8
11-037	인도네시아 투자실무가이드 (개정판)	2011.8
11-038	일본 자동차 부품 MAP	2011.8
11-039	2010년도 Invest KOREA 연차보고서	2011.9
11-040	Green Hub Korea 2011 결과보고서	2011.9
11-041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11.10
11-042	외국인투자 현금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1.10
11-043	캄보디아 투자실무가이드 (개정판)	2011.10
11-044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스마트 디바이스	2011.10
11-045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로봇	2011.10
11-046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디지털방송	2011.10
11-047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시스템반도체	2011.10
11-048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3D	2011.10
11-049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Telematics	2011.10
11-050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RFID	2011.10
11-051	IT해외진출 전략품목 - Security	2011.10
11-052	2012 해외진출종합가이드	2011.10
11-053	미국 정부조달시장 진출가이드	2011.10
11-054	2011년 상반기 해외 FDI 동향	2011.11
11-055	국제개발은행 시장진출 안내	2011.11
11-056	그린리포트(Vol 13. 2011 Autumn)	2011.11
11-057	인도의 해외투자 동향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2011.11
11-058	아프리카의 슈퍼스타 국가를 주목하라	2011.11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1-059	CIS 미래 (태양전지, 의료기기, 지능형 교통체계) 시장을 잡아라	2011.11
11-060	2012 한국을 뒤집을 14가지 트렌드	2011.12
11-061	2011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 - 의료 (미국, 중국)	2011.12
11-062	2011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 - 의료 (UAE, 러시아, 카자흐스탄)	2011.12
11-063	2011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 - 콘텐츠 (일본, 중국, 독일)	2011.12
11-064	2011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 - 콘텐츠 (미국, 태국)	2011.12
11-065	2011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 - 이러닝 (미국, 중국)	2011.12
11-066	2011 주요 서비스 분야별 해외진출 가이드 - 엔지니어링 (중국, 베트남)	2011.12
11-067	주요 8개국 해외투자상담사례집	2011.12
11-068	2012년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유치 전망	2011.12
11-069	그린 리포트 2011 Winter	2011.12
11-070	일본 소비재 유통 MAP	2011.12
11-071	필리핀 투자실무가이드(개정판)	2011.12
11-072	2011 아시아 주요국 투자환경 비교조사	2011.12
11-073	외국인직접투자 상위 100대 기업의 투자동향분석	2011.12
11-074	Guide to Living in Korea 2012 (영문)	2011.12
11-075	Guide to Living in Korea 2012 (일문)	2011.12
11-076	2011 주요국 정부조달 현황	2011.12
11-077	주요국 투자유치체계 벤치마킹	2011.12
11-078	주요국 입지지원제도 비교	2011.12
11-079	SRI 동향조사	2011.12
11-080	해외투자진출전략 로드맵	2011.12
11-081	FDI Site Support & Permit System (국문)	2011.12
11-082	FDI Site Support & Permit System (영문)	2011.12
11-083	KOTRA의 창을 통해 미리보는 2012년 세계경제	2011.12
11-084	2011/2012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상권/세계편(중국제외)	2011.12
11-085	2011/2012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하권/중국편	2011.12

- 사회적책임투자(SRI)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 동향 조사 -
-KOTRA 자료 11-079-

발행인 : 오 영 호
발행처 : KOTRA
편집인 : 박 진 형
발행일 : 2011년 12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인쇄처 : 화신문화주식회사

Copyright ©2011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

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